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95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2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6. 4. 24.

다. 상정·의결일자: 2026. 5. 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진흥과장 노석철)

가. 개정이유

- 고성군 해양관광시설의 방문객 유입 근거 마련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이용료 감면확대를 통해 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종 홍보 행사 및 시책 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
- 시설 활성화 등을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 및 감면의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위임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등 조정 및 지역 주민 이용증대를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안 별지)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48조

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시설의 이용제한 기준 및 감면 대상 규정 신설
[복지지원과-12621(2026. 3. 19.)호]

4) 기 타

-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598호
 - 예고기간: 2026. 3. 12.~2026. 4. 1.(20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4조) 홍보 및 시책 추진 시 홍보물·시상금·기념품·경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7조, 별표4) 이용료 감면기준을 별표로 정비하고 탄력적 감면 근거를 마련한 점은 타당하며, 시행규칙 위임도 적정함. 다만 감면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세부 적용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 시설의 무상·감면 사용과 관련해 법령 준수 측면의 보완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 폭언·폭행·성적 위해행위 등을 이용 제한 사유로 구체화한 것은 이용자 안전 확보와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별표) 시설 명칭, 이용 시간, 이용료 및 환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함.

나.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 및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5. 7.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